

01	02	03	04	05	06	07	08	09
과제기획	과제신청	협약	사업운영	전자금융 관리	최종점검 및 최종평가	온라인 정산	기술료	기타

기술료 청년고용 유예(신청) 매뉴얼

[청년일자리대책 R&D 3종 패키지]

[청년고용 2년간 유지 후 감면(확정) 신청 필요 대상]

2021.5

I.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(신청)

1. 개요

-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기술료 납부를 유예하고 해당 인력에 대하여 2년간 고용 유지 시 급여액의 50% 만큼 기술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기술료 유예는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2년간 고용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2. 신청대상 및 방법

- (신청대상) 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완료(성공) 과제 중 기술료 납부 대상기업
 - * 시행기간 :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고시일('18.7.2)부터 '22.12.31까지 한시적 시행
- (신청자격) 최종 평가결과 완료(성공) 통보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이전 시점에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*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**의 참여연구원(청년인력, 내국인)을 신규 채용 하는 경우
 - 예를 들어 과제 완료(성공)일 '20.10.01 경우 '20.04.01~'20.10.01 채용된 인원
 - * 기술 고도화, 시제품/시작품 추가 개발, 기술이전 등
 - ** 군대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확인을 통한 군 경력 인정하여 나이 계산
- (신청방법) 기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
 -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,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신청서 및 청년인력 활용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*
 - * 증빙자료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
- 자세한 기술료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료 징수담당자 (smfee@tipa.or.kr), 통합콜센터(1357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감면대상 및 방법(기술료 청년고용 감면확정 매뉴얼 별도 참조)

- (감면대상)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신청은 유예기간(2년) 종료 이후부터 가능
 -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
 -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기술료 납부금액으로 산정되며, 기술료 규정에 따라 납부
- (신청방법)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
 - 유예기간 종료 시 : 유예기간(2년) 동안 고용유지 시 해당인력 2년간 연봉의 50% 만큼 기술료를 감면하고 잔여기술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
 - 사유 소멸(미이행) 시 :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,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(고용 종료일이 기산일)
- 감면 후 기술료 산정방법
 - (연봉산정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
 - (기술료 산정) ① 정액기술료 ② 경상기술료 구분 산정

① 정액기술료 : 기술료 감면 적용 후 잔여기술료에 대하여 납부 기술료 산정
- 협약 당시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납부기술료 및 감면을 등 적용

② 경상기술료 : 기술료 감면 적용 후 잔여기술료에 대하여 착수기본료 및 정률기술료 산정
- 협약 당시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경상기술료 실사 등을 통해 납부기술료 산출

구 분	고용연계 감면 적용 후 기술료 산출 방식
정액기술료	정액기술료 납부액 = (정부납부기술료-고용연계 감면액)×(100%-조기납 감경율)
경상기술료	경상기술료 납부액 = (실시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액×기업규모별 징수한도액) - 고용연계감면액

- 자세한 기술료 감면 신청 및 적용사항은 '기술료 청년고용 감면(확정) 매뉴얼' 참조

* SMTECH(smtech.go.kr) > 고객지원 > 이용매뉴얼 > 8. 기술료 > 감면(확정) 매뉴얼 참조

4. 기타 유의사항

○ 청년고용 유예·감면 기술료 **불인정 사례**

- (사유소멸) 실시기업 또는 채용인력의 사정으로 **고용이 취소 또는 변경***

* 청년인력 신청 후 등록된 인력은 **교체 또는 변경은 불가**

- (중복지원) 중기부 또는 타 정부과제에서 **해당 고용분**에 대해 이미 **기술료 감경 또는 면제**를 받은 경우

- (허위보고) 신규 채용 인력의 고용 관련 **허위 자료 제출**

- (미제출) 기술료 감면 관련 **서류 미제출**

* 고용취소, 중복지원, 허위보고 등으로 감면 사유가 소멸되는 날 기준으로 정액기술료 감경을 적용

○ 청년고용 유예 대상자 **퇴사자 발생의 경우**

- 퇴사일로부터 **30일** 이내 **전문기관에 이메일 통보(smfee@tipa.or.kr)** 이후, **기술실시계약 체결**

* 단, 퇴사인력 외 유예 대상인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, 퇴사자의 확인서류만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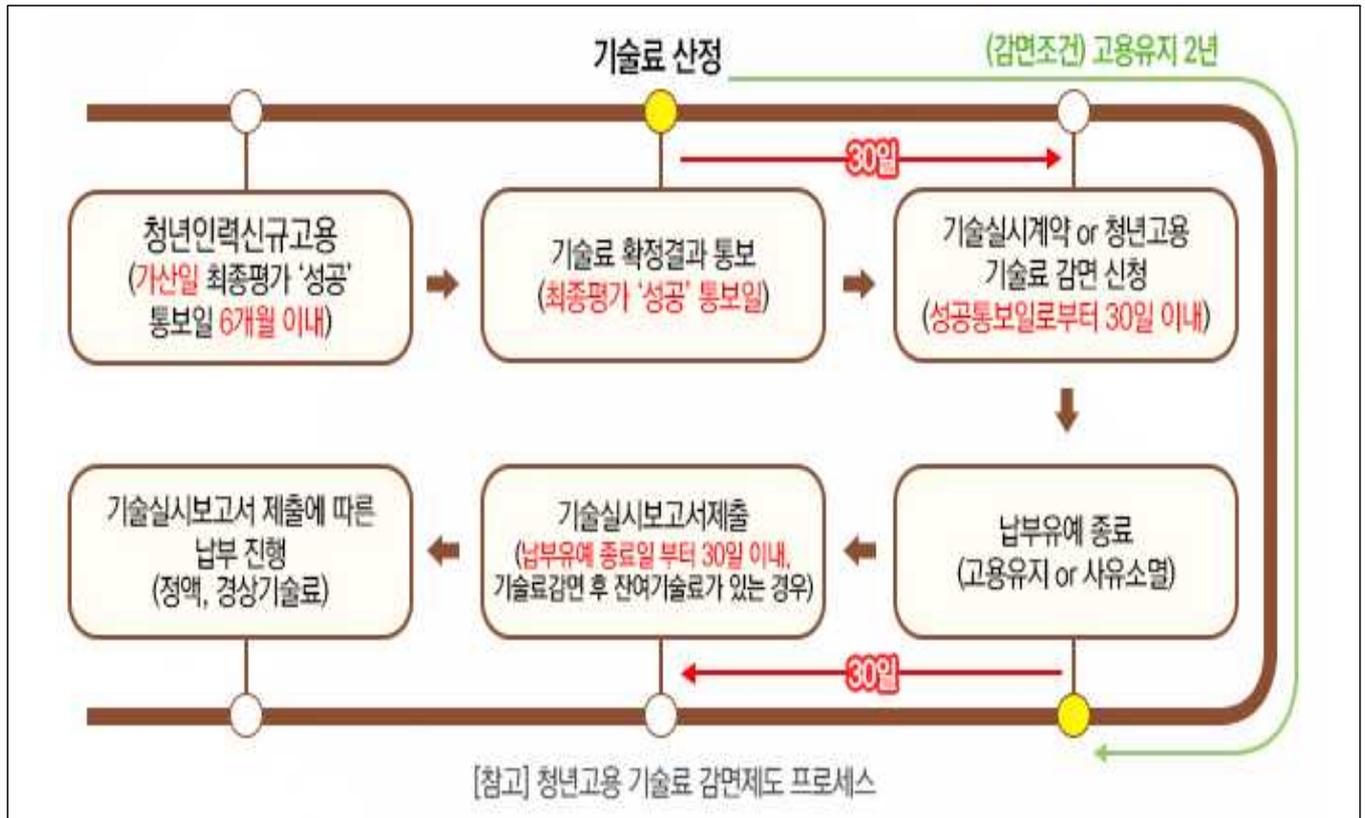
- 퇴사인력 확인서류 : 공문(과제번호, 퇴사자명, 퇴직사유 등 기재 필수), **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**(퇴사자 및 자격상실일 포함 발급 필수)



사업장 가입자 명부					
발급번호 : JG 139		page : 1 / 4			
* 「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」는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 신고된 가입자 중 발급대상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명부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」에 이의 발급·관리 되고 있습니다.					
* 「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」는 발급신청 시 명시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 하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별다른 확인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					
사업장명	(주)연	사업장관리번호		단위사업장거호	
단위사업장명	연	121		140 - 000	
제출처		가입자		발급사유	
입원번호	주민번호	주민번호	성명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
1 806	541 -2***	* 권	?	2017.01.02	
2 803	551 -1***	* 김	?	2013.01.02	2013.09.18
3 803	6411 -1***	* 김	?	2012.05.01	2014.03.02
4 805	6601 -1***	* 권	?	2015.06.01	2018.01.01
5 807	6611 -1***	* 박	?	2017.11.15	2019.05.01
6 808	7001 -1***	* 이	?	2019.04.01	
7 806	7101 -2***	* 이	?	2016.08.01	2017.08.01
8 807	7101 -1***	* 박	?	2017.11.15	2019.05.01
9 802	7101 -1***	* 장	?	2010.06.01	2011.11.01
10 807	7201 -1***	* 권	?	2018.01.01	2019.05.01
11 807	7201 -1***	* 봉	?	2017.11.15	2019.05.01
12 802	7201 -5***	* 김	?	2010.09.01	2014.06.11
13 805	7201 -5***	* 김	?	2014.07.28	
14 807	7201 -1***	* 노	?	2017.11.15	
15 808	7211 -1***	* 이	?	2019.05.01	
16 808	7301 -1***	* 박	?	2018.06.11	2018.09.22

발급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(상실자) 발급 진수 총 명
 발급목적 : 건강보험 업무 건강보험 업무외(의무기관 제출 등)
 *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수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.
 2019.05.23
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서장

○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·감면 제도 프로세스



II. 청년고용 감면신청 체크리스트

내 용	해당여부 (O, X)	
<p>Q1.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(최종평가 '성공' 통보일, 이하 "기산일"이라 한다)을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고시일('18.7.2) 이후 받았는가?</p>		
<p>Q2. 신청서 제출이 기산일로 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?</p>		
<p>Q3. 기산일 6개월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하였는가? (단, 청년인력 나이 기준은 채용일 기준으로 한다.)</p>		
<p>Q4. 해당 청년인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가?</p>		
<p>Q5. 청년인력의 고용유지를 기산일 이후, 2년간 유지할 수 있는가?</p>		
<p>※ Q1~Q4 질문까지 하나라도 X 가 있는 경우, 청년고용 감면신청 불가 ※ 단, '18.12.31 이전 기산일 과제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채용 ※ 제도 초기 적극적 시행을 위해 초기 대상기업(~'18.12.31까지 기산일 대상)은 30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신청 접수 가능(단,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불가)</p>		

Ⅲ. 주요 질문 및 답변

Q1. 신규채용 청년인력이 중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
- (답변) 자/타의에 상관없이 **청년인력이 중도 퇴사**하게 되면, 기술료 감면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**30일 이내**에 **전문기관에 통보**하고 **기술실시보고서**를 **제출**해야 합니다.

Q2. 신규인력이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?

- (답변) **조기납부**에 의한 **감경이 가능**합니다. 단, 해당 청년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진행합니다. 따라서 고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보고서를 통해 납부계획(일시납, 분할납부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(추가) 또한, 최초 신청당시 제출하신 **기술료 납부방식**(정액기술료, 경상기술료)은 **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**(단, 경상기술료 신청기업은 실태조사 결과 수행능력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)

Q3.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 제출 시, 기술실시 계약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?

- (답변) 기술료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실시계약은 납부유예 종료일까지 연기되는 것이며, **납부유예가 종료(고용유지 또는 사유소멸)**되면 **30일 이내**에 **전문기관에 기술 실시보고서**를 **제출**해야 합니다.

Q4. 다수의 청년인력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
- (답변) **과제당 청년인력 고용의 수**는 **제한**되어 있지 **않습니다.** 신청대상 3명 중에 1명이 중도 퇴사했을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달성시에 기술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5. 청년인력이 퇴사한 경우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?

- (답변) **불가합니다.** **최초 신청당시**의 청년인력의 **고용**이 **유지**되어야 합니다.

Ⅳ.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서 제출 방법

1.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서 제출

- SMTECH(smtech.go.kr)에 대표자 및 권한이 지정된 책임자로 로그인합니다.
- 'Home > 연구비정산 > 기술료 정산금 조회 >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' 메뉴에서 **기술료 유예 신청 대상과제**를 조회하고 **보고서 제출**을 **클릭**하여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.

연구비정산

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

연구비정산 > 기술료정산금조회 >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

청년고용 유예신청 대상과제

과제명
과제번호
조회하기

청년고용 기술료 유예-감면신청 안내

- 중소·중견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고, 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시 기술료납부 유예 및 감경
- 청년인력 인경범위는 기산일(원료통보일) 6개월 이전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만15세 ~ 34세 이하의청년인력(내국인)을 신규 채용 하는 경우
- 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
대상과제

선택	사업명	과제번호	과제명	정부출연실사용금액	유예신청서 제출기한	납부방식	상태
<input type="radio"/>	창업성장-기술개발사업			113,735,378	2020-08-25		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창업성장-기술개발사업			143,952,998	2020-04-22		

제출서류확인
신청서 작성

❖ 상세 Guide ❖

- ①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기한 조회됩니다.(기한 초과시 신청 불가)
- ② 유예 신청할 과제번호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화면으로 이동됩니다.
- ③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에 대한 상태가 조회됩니다.
 - **제출** : 신청서 제출 완료. 해당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.
 - **승인** : 유예 신청이 승인된 상태입니다.
 - **반려** : 반려사유 확인 후 다시 제출이 가능합니다(기한 내). 반려사유는 상세화면에서 확인 가능

※ 이미 **기술실시계약을 체결**한 경우에는 **신청이 불가능**합니다.

※ 유예 승인 이후 대상 인력이 **중도 퇴사한 경우 30일** 이내 **전문기관 통보** 후 **기술실시보고서**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(일부 퇴사 시에는 유예 상태 인정)

○ 기관정보 및 기술실시 유형,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연구비정산

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

> 연구비정산 > 기술료정산금조회 > 기술실시작성

▶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

1. 과제정보

사업분류	창업성장-기술개발사업		
과제번호		개발기간	2018-10-15 - 2019-10-14
과제명			
통보일자			
전문기관			

2. 기관 정보

기업명	사업자번호	기관대표자	분담율	기업규모
			100%	<input type="radio"/> 중견기업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중소기업

3. 기술실시 유형

기술료 납부 유형: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※납부방식은 추후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선택 시 유의

4. 중소기업 증빙 첨부파일(※필수)

문서유형	파일명	변환상태	오류사유	문서확인	수정일
중소기업 확인서					

*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출력 가능

❖ 상세 Guide ❖

- ① 기업규모를 선택합니다.(관리자 셋팅에 따라 선택 가능한 항목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)
- ② 기술료 납부방식을 선택합니다 (유예기간 종료 이후 해당 유형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.)
- ③ ①번에서 '중소기업' 선택 시 보여지는 항목입니다. 중소기업 선택 시 '중소기업확인서'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.

※ 중소기업확인서는 [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](http://sminfo.mss.go.kr)(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**출력** 가능합니다.

○ 산정기술료 및 청년고용 대상자를 등록합니다.

● 기술료 정보

정부출연금	정산금	실사용 정부출연금	산정기술요율	산정기술료
144,000,000	0 (납부)	143,952,998	10%	14,395,000

● 청년고용 유예 신청 대상자

선택	이름	생년월일	소속부서	입사일	연봉예상액	증빙파일

삭제 상세보기 고용대상자 추가

전자공문에 대한 동의
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기술료 납부안내 및 독촉 등의 전자공문을 정보통신망(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된 주관기관 대표자 이메일)을 통해 수신하는 것에 동의함.

청년고용 유예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함

-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은 고용유지 또는 사유소멸일에 종료되며,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및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을 확인합니다.
- 고용유지 2년 완료시 감경되는 기술료 금액은 총 산정기술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 후 기술료 입금시에는 감면을 혜택이 변경되어 기존의 대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대표자 인증
대표자 주민번호 - 인증여부 :

인증서 종류 선택
 법인공동인증서(주관기관) 개인공동인증서(대표자)

이전 화면으로 임시저장 납부 유예 신청

❖ 상세 Guide ❖

- ① 산정기술요율 및 산정기술료를 확인합니다.(기업규모에 따라 요율이 변경 됨)
- ② 입력한 청년인력을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.(제출 전까지는 수정, 삭제 가능)
- ③ 입력한 청년인력 상세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.
- ④ '고용대상자 추가'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인력을 추가합니다.

-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신청 대상자의 수행직무, 활용계획, 유지 노력 등 상세내역을 등록합니다.

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 대상자			
▶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 대상자			
이름	<input type="text"/>	※ 입사일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신규재용 청년인력(군복무 기간에 따른 만나이 연장 가능 - 최대 만39세)	
생년월일	<input type="text"/>	국적	대한민국
소속부서	<input type="text"/>	입사일	<input type="text"/>
학교명	<input type="text"/>	최종학위	선택
취득연도	-선택-	전공	선택
군복무여부(해당시 체크)	해당없음	군복무기간	<input type="text"/> ~ <input type="text"/>
연봉예상액(원)	<input type="text"/>	증빙파일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업로드"/>
해당인력 수행직무 (군부분야)	<input type="text"/>		
신규인력 활용계획	<input type="text"/>		
고용유지를 위한 노력	<input type="text"/>		
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저장하기"/>			

❖ 상세 Guide ❖

- ① 청년고용 대상자를 선택합니다.(SMTECH 회원가입 필수이며 실명인증 또는 I-PIN인증 필요)
- ② 최종평가 완료(성공) 통보일 이전 6개월까지의 입사자가 대상입니다.
- ③ 군대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인정하여 나이 계산됩니다.(병적증명서 증빙 필수)
- 군복무 기간 입력하지 않아도 청년인력 나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④ 증빙파일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(필수), 병적증명서(선택)

○ 전자공문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동의 및 인증사항을 확인합니다.

● 기술료 정보

정부출연금	경산금	실사용 정부출연금	산정기술요율	산정기술료
144,000,000	0 (납부)	143,952,998	10%	14,395,000

● 청년고용 유예 신청 대상자

선택	이름	생년월일	소속부서	입사일	연봉예상액	증빙파일

삭제 상세보기 고용대상자 추가

1 전자공문에 대한 동의

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기술료 납부안내 및 독촉 등의 전자공문을 경보통신망(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된 주관기관 대표자 이메일)을 통해 수신하는 것에 동의함.

청년고용 유예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함

-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은 고용유지 또는 사유소멸일에 종료되며,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및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을 확인합니다.
- 고용유지 2년 완료시 감경되는 기술료 금액은 총 산정기술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 후 기술료 입금시에는 감면을 혜택이 변경되어 기존의 대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대표자 인증

대표자 주민번호 - 인증여부 :

인증서 종류 선택

법인공동인증서(주관기관) 개인공동인증서(대표자)

2 3

이전 화면으로 임시저장 납부 유예 신청

❖ 상세 Guide ❖

- ① 동의사항과 유의사항을 숙지 후 확인합니다.
- ② 작성중인 내역을 임시저장을 합니다.(제출마감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)
- ③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(제출 후 수정이 불가)